

공전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목적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감경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- ⑥ '갑'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-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- 3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
3. 입소 · 이용료 납부

- ① '갑'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. (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'갑' (또는 '병')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(으)로 한다.
- ④ '갑' 또는 '병'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
4. 대상 및 절차

① 계약대상
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
② 제외대상
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
③ 계약 절차



5. 비용 안내

① 구비서류
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
노인요양시설 일반

● 1일당 비용

등급	공단수가	본인부담금		
		일반(20%)	감경, 의료(12%)	감경(8%)
1등급	81,750	16,350	9,810	6,540
2등급	75,840	15,168	9,101	6,067
3~5등급	71,620	14,324	8,594	5,730

● 비용 안내



▶ 입소비용 (1일수가, 1일 비급여)

1일/원

등급	급여비용 수가(1일)	비급여비용	
		식사비(1일/3회)	간식비(1일)
1등급	81,750	9,900	1,100
2등급	75,840		
3~5등급	71,620		

▶ 본인부담금 계산 (일반비용 * 30일)

30일/원

등급	일반(20%)		
	급여(본인부담금)	비급여(식사/간식)	총 부담금
1등급	490,500	330,000	820,500
2등급	455,040		785,040
3~5등급	429,720		759,720
등급	감경, 의료(12%)		
	급여(본인부담금)	비급여(식사/간식)	총 부담금
1등급	294,300	330,000	624,300
2등급	273,024		603,024
3~5등급	257,832		587,832
등급	감경(8%)		
	급여(본인부담금)	비급여(식사/간식)	총 부담금
1등급	196,200	330,000	526,200
2등급	182,016		512,016
3~5등급	171,888		501,888

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
● 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

항목	금액	비고
경관유동식	3,300	*(1식) 기준, 식사재료비와 연동계산